

제안 번호	제 8 / 호
의결년월일	1996. . (제 호)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6. 6 . 10 .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
----------	----

제출년월일 : 1996. 8. 10.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1. 재 안 이 유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시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 요 골 자

법 제17조의8·영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법 제21조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등은 현행 대로 시장사무로 하고 시장사무로 되어 있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 (별표1.2).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사무로 하고 읍·면·동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별표1.2).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별표1]·[별표2]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일련번호·사무명·
근거법령의 총무분야 일련번호 “22” 및 “1”의 사무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분야	22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도 가능	

[별표2]

소 관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총무분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동장도 가능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1]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총무 분야	1~21	(생 략)		총무 분야	1~21	(현행과 같음)	
	22	<u>주민등록법 제17조의8,</u> <u>법 제18조의2, 법 제20조,</u> <u>법 제21조의 사항을 제</u> <u>외한 주민등록에 관한</u> <u>사무</u>			22	<u>주민등록법 제17조의8,</u> <u>법 제18조, 법 제18조의</u> <u>2, 법 제21조의 사항을</u> <u>제외한 사무. 다만, 법</u> <u>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u> <u>표의 업람 및 등·초본</u> <u>교부에 관한 사무는 읍·</u> <u>면장도 가능</u>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소관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 법령
총무 분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의2, 법 제20조, 법 제21조의 사항을 재 외한 사무		총무 분야	1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법 제18조, 법 제18조의 2, 법 제21조의 사항을 제외한 사무. 다만,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 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무는 동 장도 가능	
	2~11	(생 략)			2~11	(현행과 같음)	

심 사 보 고 서

【서산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996. 6. 17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1996. 6. 10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1996. 6. 11
- 라. 상정일자 : 1996. 6. 1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호)

가. 제안이유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조례중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고, 읍.면.동장 사무로 위임되어있는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사항을 시장도 열람및 발급할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법 제17조의8. 영 제36조제1항에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사항,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이용등에 관한사항, 법 제21조에 의한 위반자에 대한 조치등은 현행대로 시장사무로하고 시장사무로 되어있던 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별표1.2).
- 법 제2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이 읍.면.동장사무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를 시장사무로하고 읍.면.동장도 열람 및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함(별표1.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등록사무의 전산화등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 되었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무를 시장도 할 수 있도록하며
-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 및 행정의 신속성을 도모하는등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었음

5. 토 론

- 없었음

6. 소수의견

- 없었음

7. 심사결과

- 원안대로 가결